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자단체의 안전관리 및 배관망 사업 참여 및 관련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84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0. 14.
3. 회부연월일 : 2025. 10.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외에도 사업자단체¹⁾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업자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각각 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생략)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한국가스안전공사</u> 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u>한국가스안전공사</u> 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 <u>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u> ----- -----, ----- ----- ----- <u>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u> ----- -----.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생략)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 ----- <u>사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u> ----- -----.

1) 2026년 1월 기준 사업자단체는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2곳임.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먼저, 현행법 제46조제2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조치 요구 및 비용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제도는 정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중 대표 사업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총 32억 3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바 있음.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조치 실적(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작성)
	정부 지원 사업비 (예산) (A)	비목	지방비 및 자부담 (B)	기관 단위 총사업비 (A+B)	
예산	3,203	자치단체 경상보조	3,669	6,872	목표 23,000가구 실적 23,008가구 = 100%
결산	3,203	자치단체 경상보조	3,669	6,872	목표 23,000가구 실적 23,008가구 = 100%

자료: 산업통상부

다음으로, 현행법 제47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2)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은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지정조건을 충족한 한국LPG사업관리원이 마을단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 2월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지정기관으로 유일하게 운영 중임.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 부문 주도의 안전관리 및 LPG 보급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 소규모 사용시설이나 노후 LPG 설비의 경우 정부의 정기 점검만으로는 상시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민간 현장조직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사업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³⁾

2)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3) 구체적으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LPG 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용자 취급 부주의(29.3%), 제조소(26.8%), 시설 미비(22%) 등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의 일상적 관리 필요성이 중요하나,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인력 한계로 전국 300만여 LPG사용시설의 상시 관리가 제

이에 개정안은 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전담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업무(제46조제2항) 및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업무(제47조제2항)를 사업자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사업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LPG사업관리원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구축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구축 사업의 수행 주체를 사업자단체로 확대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체계 및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 사업 추진절차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고, 사고 대응시 책임주체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사업자단체는 업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소속된 사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부여에 한계가 존재하고,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가스공급업체 선정 및 민원대응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

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가 크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실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총 30명의 인력⁴⁾이 2025년 기준 총 23,008가구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 수행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지방비 매칭 이후 각 본부·지사별로 계약된 개별 지역의 가스설비 업체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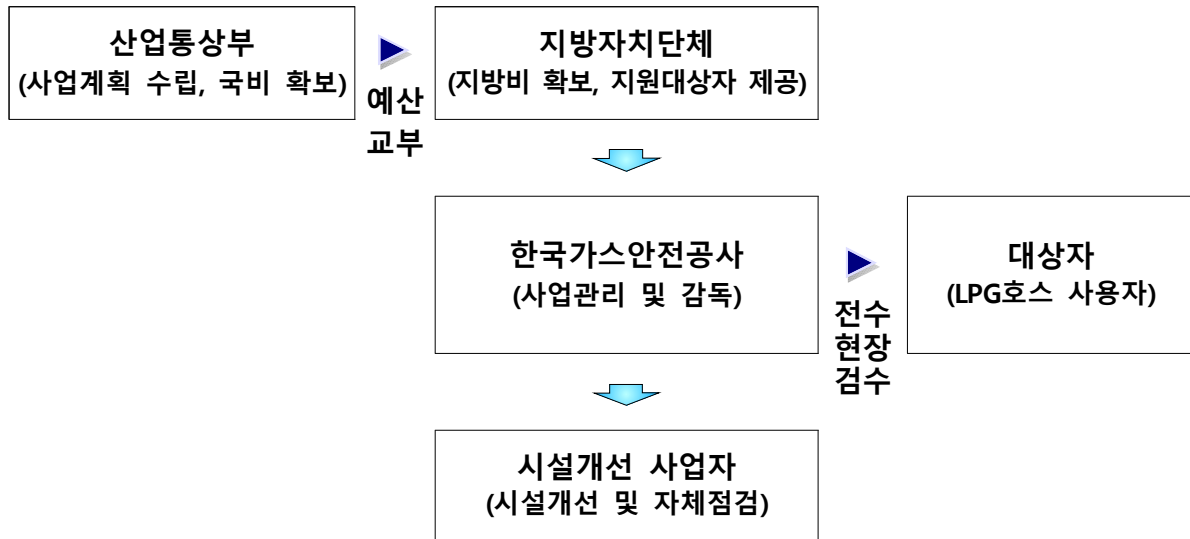
4) 본사 재난안전처 총괄담당자 1명, 전국 29개 본부·지사별 사업 담당자 각 1명(총 30명) (출처: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

5) 예를 들어, 2024년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의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AA종합설비, BB가스설비, CC가스종합설비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8,700만원의 보조금을 ‘LPG용기 시설개선비’ 명목의 지급수수료로 지출하였음.

<2024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보조사업비 지출내역(자체사업관리비 집행내역 제외)>

승인일/계약일	적요	사용금액(원)
2024-08-27	LPG용기 시설개선비 지급(AA종합설비)	12,500,400
2024-08-28	LPG용기 시설개선비 지급(BB가스설비)	12,491,600
2024-11-12	LPG용기 시설개선비 지급(BB가스설비)	12,474,000
2024-11-28	LPG용기 시설개선비 지급(AA종합설비)	30,921,000
2024-12-06	LPG용기 시설개선비 지급(CC가스종합설비)	18,605,40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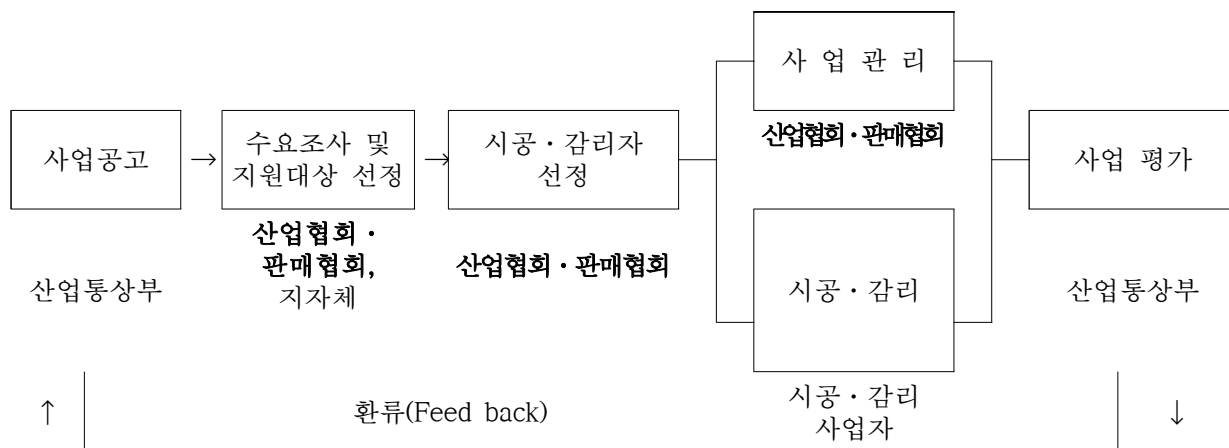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구체적으로, 「2024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사업 신청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시공 참여 신청자는 2종 시공업을 보유하고 있는 LPG판매사업자(사업자단체 소속) 62%, 전문시공업자 38%로 이루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배관망 구축 사업인 LPG 소형 저장탱크 구축 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관은 LPG사업관리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2024년 보조사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사업비 22억 3,500만원은 사업자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 및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보조사

업자로서 참여하여 집행하고 있음.⁶⁾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수행체계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은 사업구조를 고려하면, 공적 전문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사업관리원)을 통해 안전관리 및 LPG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LPG 소형저장탱크 구축 사업은 각각 이미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위탁하여 추진되거나, 사업자단체가 직접 보조사업자

6) 2024년 결산 기준 한국LPG산업협회에 대해서는 건설비로 10억 4,3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대해서는 건설비로 10억 4,3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0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회계	추진사업	주관기관	보조구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민간자본보조(8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LPG배관망 구축사업 (마을단위, 읍면단위)	지자체 (광역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자본보조(50%)

로서 참여하여 수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LGP사업관리원 중심의 사업수행체계를 사업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분산화된 안전관리체계 운영으로 인한 비용 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로, 사업자단체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 제50조⁷⁾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법률에 명시하게 될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7)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④ < 생 략 >